

# 연구비 부적정집행 사례집



2015. 6

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

# 목 차

## I. 본교 연구비 중앙관리 체계

## II. 연구비 관리 집행 가이드

1. 예산편성 일반기준
2. 세목별 상세

## III. 연구(사업) 계획서 사전 점검표

1. 지원 전반 사전 점검표
2. 연구비 사전 점검표

## IV. 연구비 부적정 집행 사례

인건비 / 연구장비 및 재료비 / 회의비 / 출장비 / 연구수당 / 연구비카드 / 기타

# I. 본교 연구비 중앙관리 체계



## II. 연구비 관리 집행 가이드

### 1. 예산편성 일반기준

비 목		계 상 기 준
직 접 비	인건비	연구기간 동안 급여 총액을 해당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기준액의 100%를 초과할 수 없음)
	학생인건비	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 (man-month기준) 학생연구원 월 인건비 지급기준 (학사과정 100만원 / 석사과정 180만원 / 박사과정 250만원)
	연구장비 재료비	실제 필요한 경비 계상
	연구활동비	실제 필요한 경비 계상
	연구과제추진비	실제 필요한 경비 계상
	연구수당	인건비(지급+미지급+현물)의 20%이내
간접비		고시율에 따름 (우리대학 고시율 2015.06 현재 29.0% ) - 단, 연구비지원기관에서 정한 자체 기준이 있을 경우 별도 적용

## 2. 세목별 상세

세 목	사 용 용 도
인건비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학생인건비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연구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 구입비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범용성 장비는 제외)</li> <li>-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경비</li> </ul>
·	
재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약 및 재료 구입비 / 전산처리·관리비 / S/W 구입(범용성S/W제외)</li> <li>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li> </ul>
연구활동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외 출장여비</li> <li>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공고료 등</li> <li>-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및 구독료, 기술도입비 등</li> <li>- 논문게재료 및 논문 심사비</li> <li>-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정보DB사용료 등</li> <li>- 설문조사비</li> <li>- 과학기술자 유치 및 파견지원금</li> </ul>
연구과제 추진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내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li> <li>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li> <li>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함)</li> <li>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야근 및 특근식대</li> </ul>
연구수당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
위탁 연구개발비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 II. 연구(사업)계획서 사전 점검표

### 1. 지원 전반 사전 점검표

점검항목	점검세부지표	점검결과	
		예	아니오
지원내용	지원분야가 공모분야와 일치한다. ..... 지원과제가 공모분야와 일치한다.		
신청자격	연구수행기관으로서 산학협력단이 신청기관 자격이 있다.		
	연구단 구성요건인 경우, 단체구성은 요건에 부합한다.		
	연구책임자의 신분과 직급은 신청자격에 부합한다.		
	공동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의 신분과 직급은 신청자격에 부합한다.		
	연구참여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중복참여등 제한사항에 저촉되지 않는다.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은 금번 신청과제를 포함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5개 이내, 이중 연구책임자로 3개 이내 연구과제 참여하고 있다.		
	모든 연구참여자는 제재조치 대상자가 아니다.		
자체지원	본교의 지원확약내용은 본교의 인사, 재정, 인프라 등의 현실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작성되었다.		
일반요건	연구수행 신청기간은 연구사업 지원기간과 일치한다.		
	연구비 신청액은 지원기관의 지원예정 규모이다.		
	참여인력의 분류는 신분과 직급에 따라 알맞게 분류됨.		
	참여기업의 현금 및 현물부담은 확약서를 통해 확인함.		
형식요건	연구수행기관 정보는 올바르게 기재되었다.		
	개인신상정보는 올바르게 기재되었다.		
양식요건	연구(사업)계획서가 서식과 양식에 따라 작성되었다.		
	제출서류는 빠짐없이 작성되었다.		
기한요건	본교 심사의뢰일자가 지원기관의 접수마감일 이전이다.		

## 2. 연구비 사전 점검표

점검항목	점검세부지표	점검결과	
		예	아니오
예산서작성	총괄표와 세부명세서의 비목별 금액이 일치한다. 세부명세서의 예산계획은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재됨.		
인건비	미지급 교수급 내부인건비, 실지급 외부인.건비로 구분하여 계상되어 있다 내부인건비가 연봉(또는 기준액)× 참여율로 계상되어 있다. 외부인건비가 기준액 × 참여율로 계상되어 있다. 인건비 기준액이 연봉(또는 기준액)과 일치한다. 내·외부 인건비의 참여율은 수행중인 다른과제 참여율과의 합이 100%를 넘지 않는다. 외부인건비는 직급별 월 상한선 이내에서 계상되었다.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 시행과제는 월단위로 계산하여 계상됨.		
연구수당	연구수당은 인건비(현금+현물)의 20%이내이다.		
위탁연구비	위탁연구비가 인건비 + 직접비의 40% 이내이다.		
간접비	간접비는 지원기관의 기준 또는 본교 간접비 기준에 맞게 계상되어 있다.		
민간부담금	참여기업 있는 과제의 민간부담금(현금, 현물)비율을 적정하게 계상하였다.		
부가세	지원기관이 연구결과물을 소유하는 용역과제의 경우 연구비에 부가세가 편성되어 있다.		
위탁정산수수료	컨소시엄 과제의 주관일 경우 사업비에 위탁정산수수료가 편성되어 있다.		
기타	그 외 정부 및 전문기관, 본교 지침에 따라 각 비목별 연구비 편성액과 집행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하였다.		

### Ⅲ. 연구비 부적정집행 사례

#### 1. 인건비

##### 불인정 사례

-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연구자가 공동 관리한 금액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여 인건비 재분배 또는 개인용도 사용)
-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친인척을 연구원으로 등록 후 인건비 지급
- 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 받는 연구원에게 인건비 집행 (원 소속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지급하여야 함)
- 특정한 사유 없이 소급하는 인건비
- 인건비(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학생인건비)가 감액되는 경우 감액되는 비율만큼 연구수당도 감액해야 함.
- 또한 인건비 일부가 이월되는 경우 연구수당도 비율만큼 이월해야 한다.

#### 2. 연구장비 및 재료비 관련

##### 주의사항 및 불인정사례

- 최종(단계) 종료과제에서 연구종료일 2개월 전까지 입고 완료되지 않은 기기·장비 및 부수기자재 구입비
- 세부내역 증빙서류 누락
- 거래명세서상의 물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이 상이한 경우
- 당초 연구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사무기기, 시설의 유지보수비 및 범용성장비
  - ※ 연구계획서 상에 컴퓨터 1대가 명기되어 있으나 연구에 필요하여 2대를 구입하여야 할 경우 산학협력단에 타당성에 대하여 내부승인을 득한 후 구입이 가능하나, 향후 주관기관에서 당해 연구과제와 무관하다고 판단되어 부적정 집행으로 지적된 사례가 있으니 주의요.
- 연구종료일이 1개월이 남지 않은 기간에 연구비 집중사용 (연구수행에 기여치 않은 연구비로 소진하기 위한 집행으로 판단.)
- 재료비를 과다 구매 후 일부만 과제수행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유용
- 납품업체와 직접 거래하는 경우 물품을 허위구입 또는 비용을 과다 계상하여 리베이트 수수
- 세부내역 증빙서류 누락
- 거래명세서상의 물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이 상이한 경우
- 컴퓨터 주변물품 (범용성 재료비 -외장하드, USB, 마우스, 키보드, 스피커 등) 연구수행에 직접 활용성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재료비 항목으로 부품들을 구매하여 조립 pc도 범용성 장비

### 3. 회의비 관련

#### 주의사항 및 불인정사례

- 공휴일/주말에 출장(업무추진, 업무협의, 자료조사 등의 경우 연구 업무 추진을 위하여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출장기간 초과, 근거없는 출장, 체재지역 외 사용금액
- 출장기간 단축 또는 취소 후 미정산한 여비
- 연구와 무관한 사적인 목적의 출장(타 과제 심사회, 학술대회 위원회 참석, 자문회의 등)이나 허위로 학회 참석 등의 여비
- 차량 렌트비, 주유비, 택시비, 주차비, 포인트로 결제한 교통비
- 개인사정으로 인한 취소 수수료(항공료, 철도이용료, 학회 참가비 등)  
회의비 사용 후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이용
- 회의내용이 불성실한 경우
- 주류 포함한 영수증 전액 불인정 (23시 이후 사용 불인정)
- 출장비(식대 포함된 경우) 지급시기와 중복된 회의비
- 같은 시간대에 두 개의 영수증 불인정
- 회의비로 처리한 식사장소가 회의장소와 불필요하게 거리가 먼 경우  
(기본적으로 행정구역이 달라질 정도면 불인정 될 소지가 높으며, 대도시의 경우 행정구역 내라도 불필요하게 거리가 먼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
- 식사를 하지 않으시고 아이스크림 구입, 카페 등에서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는 지양하고 있으며, 최근 부적정 집행으로 지적받은 사례가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 해외에서 회의비 사용 시 외국기관 지원 참석 서명록을 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서명이 어려울 경우 명함을 첨부)
- 전문기관마다 회의참석 인원에 대한 지침이 상이함에 따라 반드시 담당직원에게 문의 바랍니다. (예 -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내부참여연구원만으로 회의비를 집행하는 것은 불인정)

## 4. 출장비 관련

### 불인정 사례

- 지급일 때매기준율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차액
- 출장기간 초과, 근거없는 출장, 체재지역 외 사용금액  
(학회기간 전날에 출국하여 학회종료일 다음날에 귀국함을 원칙으로 함, 학회일자에 포함되지 않은 일수가 계상되어 있다면 제외하고 처리 함)
- 출장결과보고서가 없는 여비
- 해외출장시 체류성 경비를 지급하는 경우
- 기내 숙박료, 식비를 감하지 않고 이중 지급하는 경우
- 출장기간 단축 또는 취소 후 미정산한 여비
- 연구와 무관한 사적인 목적의 출장(타 과제 심사회의, 학술대회 위원회 참석, 자문회의 등)이나 허위로 학회 참석 등의 여비
- 차량 렌트비, 주유비, 택시비, 주차비, 포인트로 결제한 교통비
- 개인사정으로 인한 취소 수수료(항공료 및 학회 참가비)
- 출장비(식대 포함된 경우) 지급시기와 중복된 회의비 불인정
- 사용내역에 “주류, 담배 등” 표기가 된 영수증
- 구내식당에서 몇일분씩 식권 구입 불가

## 5. 연구수당

### 주의사항 및 불인정사례

-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에도 연구수당을 연구계획서상의 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음)
-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
-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단독으로 지급받은 금액
-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이에 비례하여 연구수당을 감액하지 아니하고 지급한 금액
- 한 연구과제에서 2번이상 평가하여 평가점수가 같은데 연구수당지급 금액이 상이한 경우
- 지급내역이 성과와 무관하거나 일관성이 없는 경우 (자체 평가기준과 객관성이 없는 경우 등)

